

1 대외적 준공도서 관리 기준

1.1 준공도서 관련법

- 施設物の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 (制定 1995. 1. 5 法律 第4922號)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 1995. 4. 20 대통령령 제14631호)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정 1995. 6. 3 건설교통부령 제19호)
- (구)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제정 1996. 12)
- (신)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제정 2004. 11. 10)

대외적으로 쾌적한 환경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 시설물 안전관리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1995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설립되어 시설물 관리의 제반사항을 시행·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시설물에 대한 기본지식이 향상되어가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만족을 위한 요구사항의 증가 및 민원 등 분쟁의 요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당사 준공현장의 지속적 관리 및 시공자료의 축적, 민원 등 각종 의사결정 관련 자료의 정보화를 위해 대외적으로 관리되고 제출해야 할 준공도서의 관련법, 기준 등을 알아보고, 대내적으로 준공자료의 축적 및 시공자료의 DB화를 위한 관리 기준 및 자료등과 그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施設物の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 의 목적

1) 第1條(目的) 이 법은 施設物の 安全點檢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施設物の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國民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1.29>

1.3 관련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6.12.30 99.1.29>

① “施設物”이라 함은 建設工事を 통하여 만들어진 構造物 및 그 附帶施設로서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1種施設物 및 2種施設物을 말한다.

② “1種施設物”이라 함은 道路, 鐵道, 港灣, 댐, 橋梁, 터널, 建築物 등 公衆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을 말한다.

③ “2種施設物”이라 함은 1種施設物외의 施設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을 말한다.

2) 제2조(시설물의 범위) : 시행령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 “재난관리대상시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 가능

■ 표 1. <개정 99.6.8, 02.9.6>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제2조제1항관련)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5. 건축물	-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 시설
지하도상가	-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지하도상가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 비교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산정한다.
5.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20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3) 第17條(設計圖書등의 保存義務 등) : 특별법

①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 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02.1.14>

② 施設物の 발주자 및 시공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국방 기타 보안상의 機密을 요하는 施設物에 대해 公共管理主體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施設物의 設計圖書 등 관련서류를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共管理主體는 그 사유를 韓國施設安全技術公團에 통보하 여야 한다. <新設 99.1.29, 02.1.14>

4) 제17조(설계도서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 시행령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 보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말한다. <개정 99.6.8>

- ①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②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
- ③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

5) 제11조(구조상 주요부분) : 시행규칙
영 제17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99.6.11>

- ① 교량의 교차장치
- ② 터널의 복공부위
- ③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 ④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 ⑤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 ⑥ 상수도 관로이음부
- ⑦ 항만시설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6) 제12조(설계도서류의 보존의무등) : 시행규칙

①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종류, 제출시기, 보존기간 및 열람 범위,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02.9.1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작성 및 관리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9.1>

■ 표 2. <개정 02.9.10>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제12조관련)			
구 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종 류	1) 준공 도면 2)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그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최종감리보고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관리대장
제출자	시공자	발주자	관리주체
제출처 (기관)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출시기	준공(사용승인일)후 3월 이내		
보존기간	시설물의 존속기간		
열람범위 및 절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정한 지침에 따른다.		

2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주요 내용

2.1 (구) 작성지침

■ 표 3.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본 제출 목록 - 건축물	
도 면	1) 준공도면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2) 실시설계도면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문 서	1) 건축허가서 사본 (사업계획승인) 2) 사용승인서 사본 3) 구조계산서 4) 토질 및 지질조사 보고서 (품질 관리 시험기록, 현장시험 결과, 유지관리 지침 포함) 5) 특별시방서

■ 표 4.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출서류	
발주자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감리보고서 (감리업무보고시스템)
시공자 및 설계자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시설관리대장 1부 2) 준공도서 사본 (도면용) 35mm 롤 마이크로필름 (Roll Microfilm) 1식 3) 준공도서 사본 (문서용) 16mm 롤 마이크로필름 (Roll Microfilm) 1식 4) 준공도서 사본 (도면용) 컴팩트디스크 (CD-ROM) 1식 5) 준공도서 사본 (문서용) 컴팩트디스크 (CD-ROM) 1식 6) 마이크로필름 검사 보고서 1식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7) 컴팩트디스크 (CD-ROM)의 구성 화일과 색인 화일의 출력물 1식 (도면 및 문서는 TIFF, 구성 및 색인은TXT 형식)
관리주체	시설물관리대장(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http://fms.kistec.or.kr → 시설물관리 →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2.2 (신) 작성지침

■ 표 5.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 목록 - 건축물	
대상 시설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공 통	1) 설계도서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중·횡) 2) 관련서류 : 준공내역서,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포함), 품질보증계획서, 각종 계산서 (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토질조사 보고서
7. 건축물 8. 지하도 상가	1) 건축 도면 : 배치도,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입면도, 단면도 2) 구조 도면 : 평면 및 단면도, 배근도, 철골 접합 상세도 3) 기계설비도면 : 송강기, 방·난방 및 환기 4) 전기설비도면 : 조명, 통신, 방송, 변전 및 발전 5) 소방설비도면 : 방화 구획도,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6) 급배수설비도면 : 계통도, 수조 및 정화조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표 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출서류	
발주자	감리보고서 (감리업무보고시스템)
시공자 및 설계자	1) 준공도서 사본 (도면용) 컴팩트디스크(CD-ROM) 1식 2) 준공도서 사본 (문서용) 컴팩트디스크(CD-ROM) 1식 3) 컴팩트디스크 (CD-ROM)의 구성 화일과 색인 화일 내용 1식 (XML) (도면 및 문서는 TIFF 또는 건설분야도면정보교환표준(KOSDIC), 구성 및 색인은XML 형식) - On-line 제출 또는 방문제출 (제출방법의 경과조치)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규정의 적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분야도면정보교환표준 (KOSDIC)"이라 함은 건설교통부 훈령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57조제4항에 규정에 의한 도면정보 교환표준 (건설CALS/EC 단체표준 공고 2004-3호('04.8.25))
관리주체	시설물관리대장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http://www.fms.or.kr →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2.3 색인XML 내용 예

```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master>
  <type>준공도서</type>
  <version>1.0</version>
  <const_info>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req_nm>OOO</req_nm>
    <const_ymd_from>20020101
    </const_ymd_from>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cpl_ymd>20040415</cpl_ymd>
  </const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1</facil_no>
  </facil_info>
  <doc_cd_info>
    <doc_cd_no>03</doc_cd_no>
    <doc_cd_file_cnt>4280</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준공내역서</doc_kind_nm>
      <doc_kind_cnt>332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kind_info>
      <doc_kind_nm>특기시방서</doc_kind_nm>
      <doc_kind_cnt>96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master>
```

2.4 시설물관리대장 전산입력 안내(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1) 근거규정
 - (1) 시설물 관리대장 전산입력
 - 『건설교통부고시 2003-170호(2003.7.4)』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제2장 시설물 관리일반
 - 2.1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제출은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fms.kistec.or.kr>, <http://www.fms.or.kr>)의 각 입력항목을 입력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전산입력
 - 『건설교통부고시제2002-318호(2003.1.7일자판보)』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
 - 제6장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표준(안)
 -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매년 3월 15일까지 시행실적은 시행 즉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실적제출”란에 접속하여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2) 사용방법
 - (1)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실적 제출” 메뉴를 클릭하거나,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fms.kistec.or.kr>, <http://www.fms.or.kr>)에 직접 접속하여 신규 또는 기 발급된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신 후 동 시스템의 공지사항 및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는 입력절차 등 시스템 사용방법에 따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준공도서관련 요약

3.1 설계도서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우리공단에 제출토록하고 있고,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공단에서는 이를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11.10 개정)

3.2 제출대상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

3.3 제출시기

시설물 준공후 3개월 이내 또는 시설물에 대한 중요한 보수, 보강 후 3개월 이내

3.4 제출물

- 1) 시설물관리대장 - 온라인 제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부록)
- 2) 도면용 컴팩트디스크(CD-ROM) 1식
- 3) 문서용 컴팩트디스크(CD-ROM) 1식

3.5 검사 및 보존

- 1) 공단에서 제출된 설계도서가 규정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여 「접수필증」을 교부하며 미비된 경우에는 내용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제출
- 2) 공단에 제출된 설계도서는 현황검색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

■ 그림 2. 접수필증 예

시설물안전관리예견특별법 대상시설물
준공도서 사본 접수(제출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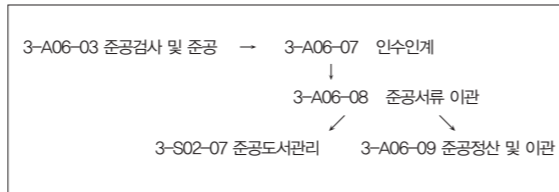
공사명	서면 쌍용동리리업	접수번호	2004-0513
제출자	대표 : 정동진(주)	제출자명	김 변 준
1. 시설물관리대장			
2. 도면용 MICRO FILM		3	
3. 문서용 MICRO FILM		1	
4. 도면용 CD-ROM		1	
5. 문서용 CD-ROM		1	
6. MICRO FILM 공사보고서		4	
7. 구성설비공 색인용질 출력물			

1. 위 준공도서 사본을 접수하셨습니다.
2. 접수된 준공도서 사본은 「준공도서 사본 작성관리지침」에
따라 접수를 하계되어 필요시에는 보완요청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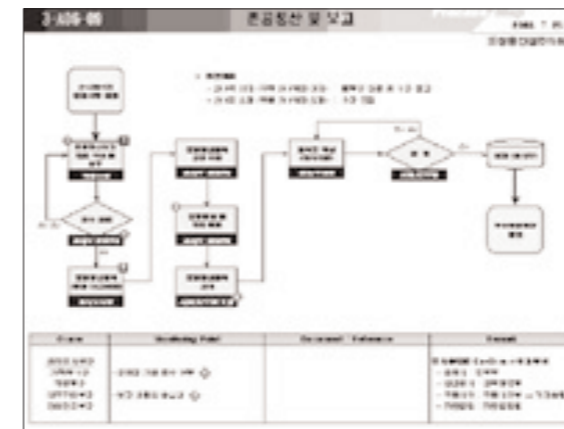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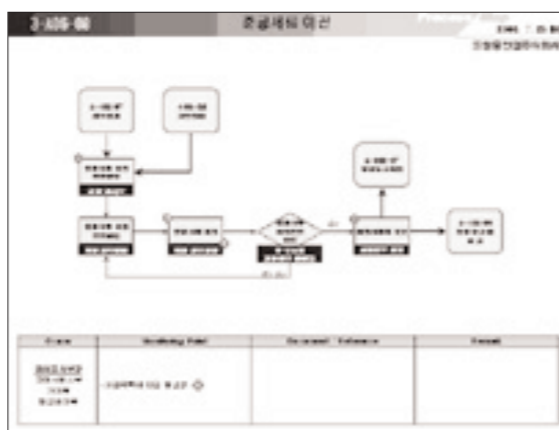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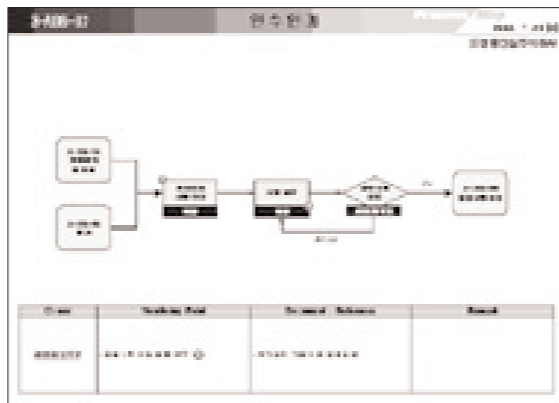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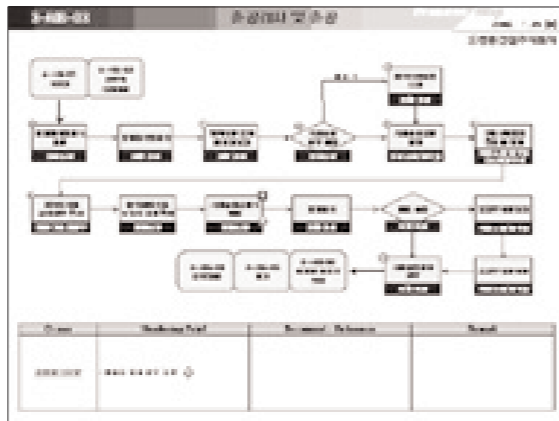
2004 년 4 월 26 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시설물정보센터 정보관리
장 가림

4.1 준공도서 관련 업무 흐름도



4.2 준공도서관련 업무 Process



4.3 대내 준공도서 관련 요약

- 준공도서의 사내제출은 연면적 등 어떠한 기준에도 의하지 않고 전현장에 해당

- 제출물
 - ① 도면용 콤팩트디스크(CD-ROM) 1식
 - ② 문서용 콤팩트디스크(CD-ROM) 1식
 - 관련문서 : 공사현장 · 시설물 개요 및 특기사항
건축허가서(사업계획승인), 사용승인서, 준공내역서,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포함), 각종 계산서 (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토질 및 지질조사 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품질 관리 시험기록, 현장시험 결과, 유지관리 지침 포함)
 - 중요문서자료 : 3-A06-03, 3-A06-08 참조 (특히 대내의 공문서 및 의사결정회의 자료)
 - 가능할 경우 도면용 · 문서용을 동일 CD로 제출 가능
 - ③ 설계도서 접수필증 1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2005년 시설안전기술공단의 On-line 제출여부에 따라 제출내용 개정 예정

4 대내 준공도서 관리기준

■ 그림 3. 건축 프로젝트 운영 전체화면

